

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(제83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강의실(m ²)	전임강사(명)	전담직원(명)
지정 요건	100	2	2

비고

1. 강의실은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, 강의실에는 의자·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2. 전년도 안전교육등의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명을 초과한 이수자의 수를 기준으로 1만명당 1명의 전임강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.
3. 전임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건설기계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 - 나. 건설안전, 기계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
 - 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,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 -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 - 마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
 - 바.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산업안전 및 건설기계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
 - 사. 해당 분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 안전교육등에 대한 강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